

#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9월 19일
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 
김동욱, 김성준, 김영철,  
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 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 
문성호, 박영한, 박춘선,  
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 
송경택, 신동원, 심미경,  
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영희, 이경숙, 이병윤,  
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 
이종태, 이희원, 장태용,  
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 
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 
황철규 의원(43명)

## 1. 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예전보다 확장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세부화 및 사전 시범사업의 실시근거 및 의견수렴, 실태조사 추가함. 이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마련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(안 제5조제 1항제1호)

나.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할 수 있음(안 제6조1항제1호, 제2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한”을 “위해 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
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
3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,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.
2.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, 구청,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8조(실태조사) (생 략)

<신 설>

1.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, 공모등을 통해 시범 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.

2.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, 구청,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.

문서 번호

2022083100000006

## 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혜지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김지혜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2.08.31.

회신일 : 2022.09.0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1항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, 구청,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※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4호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2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5조제1항제1호	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	300,000
제5조제1항제4호	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	141,000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2,120,000천원(연평균 424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,120,000천원으로 연평균 424,00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전제
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2,120,000천원(연평균 424,000천원)

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 계
구분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입	민관협력사업 비용 (제5조제1항제2호)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400,000
	홍보 및 교육 비용 (제5조제1항제3호)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신청, 공모 등 시범사업 비용 (제6조)	94,000	94,000	94,000	94,000	94,000	470,000
	실태조사 비용 (제8조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소계(b)	424,000	424,000	424,000	424,000	424,000	2,120,000
총비용(b-a)		424,000	424,000	424,000	424,000	424,000	2,120,000

○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비용 ≒ 400,000천원

- 민관협력사업 비용

= 80,000천원 × 5회

※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민관 협력사업 추진비 준용

○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≒ 1,000,000천원

- 홍보 및 교육 비용

= 200,000천원 × 5회

※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자전거 홍보 기획 및 홍보물 제작 등(자전거도로 등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 등) 비용 준용

○ 신청 및 공모 등을 통한 시범사업 ≒ 470,000천원

- 신청 및 공모 등을 통한 시범사업 비용

= 94,000천원 × 5회

※ 2022년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모사업 비용 준용

○ 실태조사 비용 ≒ 250,000천원

- 실태조사 비용

= 50,000천원 × 5회

※ 2022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실태조사비 50,000천원 준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